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7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국가안보위해 여부 심의 및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4
2. 외국인의 간접적 지배권 취득 및 신고절차 정비	10
3. 보고·조사 권한 확대 등	20
4. 벌칙 부과 및 강화를 통한 이행강제력 제고	23
5. 시행일	31
※ 참고자료	32
참고1. 국가안보위해시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32
참고2. 현행법령상 외국인투자 정의 및 범위	35
참고3. 외국인투자 직접 vs. 간접투자 구조 비교	37
참고4.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서 서식	38
참고5. 간접적 지배권 취득 관련 해외 입법례	39
참고6. 핵심·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벌칙 부과 입법례	4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
3. 회부연월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3항, 제5항)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외국인투자의 국가의 안전 유지 지장 초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청의 보고명령 권한 등 강화(안 제28조제2항,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34조, 제35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미신고·등록(변경신고·변경등록 포함),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Ⅲ. 검토의견

1. 국가안보위해 여부 심의 및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제27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u>④</u> (생략)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제2항제1호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u> <u>⑤ 제4항의 심의·제한의 대상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⑥·⑦</u> (생략)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 ----- -----.

현행	개정안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2.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u> <u>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u> <u>여부에 관한 사항</u>
12. (생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을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 ----- ----- ----- ----- 두고,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 ----- <u>외국인투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u> ----- -----.

현행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됨.

[표 2] 현행법상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다 구체적인 외국인투자 제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우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국가안보위해 심의대상 해당여부 확인

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은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¹⁾).

사전확인요청이 없더라도 ① 이후 투자가 진행되어 외국인투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신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거나, ② 국정원등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검토요청이 있거나, ③ 또는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²⁾³⁾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⁴⁾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 산업부장관은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

1) 관련 조문은 참고1 참조

2) 참고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현황을 적발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외국인의 사전 확인 요청이나 신고 등 없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안보위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 [시행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59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참고로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및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생략 가능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허하거나, 조건부 허용⁵⁾ 또는 허용하는 결정·통지를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는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사전·사후적으로 신고하거나 현행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도록 되어있고, 허가·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허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제재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이상거래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는데, 직권심의 근거마련, 심의체계 효율화 등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근거 및 체계를 법률에 마련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4조제4항은 외국인의 사전확인 요청을 받지 않더라도 산업부장관이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에 따라 외국인이 사전 확인 요청·신고 등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회피하

5) 특정 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의2제5항)

는 경우를 방지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제도 및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표 3]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외투위*) 산업부 장관(위원장), 15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부위원장 또는 차장 / 동건 관련 시·도지사, KOTRA 사장 포함
 - * (의사정족수) 참석가능한 위원의 과반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
 - ** (15개 중앙행정기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방사청, 금융위, 국정원
- (전문위*) ▲(당연직) 무투실장(위원장), 투자정책관(간사), 기재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정원·KOTRA·전략물자관리원 소속직원 ▲(위촉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외투위원장이 위촉
 - * (인원) 총 20人 이내,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과반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
- (실무위*) ▲통상교섭본부장(위원장), 15개** 중앙부처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지자체 부단체장, 투자지원센터의 장, 외투옴부즈만
 - * (의사정족수) 참석가능한 위원의 과반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
 - **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방사청, 금융위, 국정원

2. 외국인의 간접적 지배권 취득 및 신고절차 정비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제한범위에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국내기업 등을 간접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심의·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간접지배 투자시에도 의무적으로 투자·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경영상 지배권 취득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각종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및 제5조).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⑤ (생략) <u>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이외에도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④ (생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 ----- ----- -----.

현행	개정안
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1. ~ 6. (생략)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취득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 각 목 또는 제4조제6항의 ----- ----- ----- ----- ② ----- ----- ----- ----- 다만,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 분야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신고하여야 한다. ④ ----- ----- ----- -----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우선, 현행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의 주식·지분 취득(가목), 해외 모기업 등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차관 대부(나목), 과학 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출연(다목),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라목), 그 밖에 학술·예술·의료·교육 목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 등(마목)으로 정의됨⁶⁾.

정부는 각종 세제지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현금지원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각종 신고·허가 및 벌칙 규정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보건위생·환경보전·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및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이 중 국가안보위해와 관련하여 현행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목) 국가안보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나목)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으로 “외국인”이 직접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하여”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로 명시하여 직접적 지배권 취득의 경우에만 국가안보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간접적 지배권 취득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6) 관련 조문은 참고2 참조

여지가 있음.

그러나 외국인이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방위산업물자 생산, 물품·기술의 군사목적 전용, 국가기밀 내용 공개 등에 따른 국가안보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안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안 제4조제6항은 외국인이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1항은 이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간접투자 역시 기존 외국인투자와 같이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안 제5조제3항은 모든 변경신고를 의무화하여 외국인투자 신고를 자율적 준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정의 규정은 확대·변경되지 않으면서 간접투자로 인해 국가안보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은 외국인(0차)이 외국인투자기업(1차 지배)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다른 기업(2차 지배)을 실질적으로 지배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후 2차 지배를 받는 한국기업이 투자 등을 통해 다른 기업을 3차 지배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1차 지배)을 통해 다른 한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모든 간접지배(n차 지배) 기업에 대해서 규율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n차 지배를 받는 한국기업은 다른 방위산업, 첨단산업 등에 투자할 때 외국인투자로 간주되어 각종 신고의무 및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므로, 개정안 심사시 간접지배 규제 범위의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외국인투자는 최초 외화가 유입된 경우만 통계관리하고 있어 n차 투자에 따른 간접적 지배권 취득현황이나 개정안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액 총액은 345.7억달러(신고 기준), 사모펀드를 통한 외국인투자액은 66.6억달러 수준임.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 분야 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허용하

지 않고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며, 이는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간접지배권 취득의 경우 반드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사전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이 중 경영상 지배권 취득⁷⁾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때 사전신고의 면에서 소액지분투자는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주요 사업·기술 분야는 첨단산업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동 개정안은 사전신고 의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측면이 있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은 하위 법령 위임시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체 사업·기술분야가 아닌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⁸⁾하려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7) 경영상 지배권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 중 소액지분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주요 권한(임원 선임, 해임청구, 소수 주주권 등)을 특정 지분을 이상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보유상황·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자본시장법」 §147)하도록 함.

8)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과 같이 규율하려는 취지로 보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

으로 보임.

즉,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분야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분야 투자 등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5조제4항 단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보류 또는 거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신고시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보류·거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산업부장관이 실질적으로는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수리하도록 함.

이에 따라 해당 신고의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된 것으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로 보이는데, 안 제4항본문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법문언상 신고의 법적성질이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음.

법령상 신고는 그 법적성질에 따라 신고 수리거부·미수리의 처분성, 효력발생시기 등이 결정되고 행정쟁송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법문언상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2020년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제처의 입법예고⁹⁾, 2021년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 제34조¹⁰⁾ 및 이에 따른 최근 입법추세를 고려하면 통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의 필요성을 법문언에 명시하고, 기간 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¹¹⁾하여 왔음.

9)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4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번호 제2020-47호, 2020. 5. 19.

10)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1)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24&astClsCd=CF0101>) 수리가 필요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장관은 제○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되, 허가 제도를 완화한 취지에 맞게 요건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수리될 정도로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신고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준은 등록보다도 완화된 것이므로 수리 여부가 거의 기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성해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리 간주 규정을 두도록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전문자격이 필요한 영업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두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도 신고의 법적성질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투자신고가 외국인 투자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1안) 외국인투자신고 전체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되는 것인지 명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2안) 개정안이 주로 국가안보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허가제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변경되던 연혁 등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으로 일부 신고에 대해서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2안).

[표 5] 수정의견 예시: 행정청의 신고 수리 의무 명시

- | |
|---|
| <p>1안) 외국인투자신고 전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p> <p>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2안) 국가안보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p> <p>④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분야 투자 등 국가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
|---|

마지막으로, 현행법령상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투자도 직권으로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

는데 개정안과 같이 간접투자도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제한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면, 외국인이 기존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심의·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됨.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각종 투자·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심의·제한을 받도록 할 필요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는 법률개정을 통해 이미 종료된 기존의 외국인투자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심의·제한·규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기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제한받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 간접지배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외국인투자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제한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개정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조치 규정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 사후관리 강화 및 보고·조사 권한 확대 등

개정안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안보위해 여부 심의를 받지 않고 주식등을 취득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마련하고(안 제21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도 보고 주체로 포함하며, 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이 반드시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④ (생략)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준</u>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 <u>요건</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u>외국투자자</u> ,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 ----- ----- ----- <u>외국인, 외국인투자자</u> ----- ----- ----- -----.
<신 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u>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⑥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 각 호에 <u>해당하는 사실</u> 을 발견한 경우	2. ----- <u>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u> -----

현행	개정안

우선, 개정안은 등록기업의 금지행위¹²⁾ 중 하나로 국가안보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는데, 이에 따라 등록기업이 국가안보위해 심의를 누락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부과됨.

다만, 국가안보위해 심의는 재량행위인데 개정안의 표현상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주식등의 취득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보고 및 자료·의견 제출 요청 대상을 외국인투자가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모회사, 계열사 등에 대해서도 자료수집 등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최근 국제화 추세를 고려하면 외국인투자가 역시 모회사·계열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최종적인 모회사 및 계열사 전체를 파악하여야 국가안보위해 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

1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 폭넓게 자료요구를 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등으로 한정하여 자료제출 요청대상 범위를 법률상으로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산업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전적으로 실효성 있게 외국인투자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통상의 입법례는 법률 위반이 있고 이에 따라 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무위반 사실 없이 외국인투자제한에 해당할 가능성만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벌칙 부과 및 강화를 통한 이행강제력 제고

개정안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외국인투자허가, 시정명령 미이행시에 대한 벌칙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며,

고의로 신고의무 등을 회피하거나 심의 이전에 외국인투자를 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등).

[표 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 ----- 자는 5년 ----- ----- ----- 5억원 ----- 처한다(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1. (생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6조·제37조 (생략)	<u><삭제></u>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1.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고의로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 이전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제36조(벌칙)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제38조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우선, 현행법 제35조는 외국인투자 허가규정을 위반한 경우(제1호), 외국인투자음부즈만의 비밀누설등(제2호), 허가·신고 또는 외국인투자 제한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제3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표 8] 현행법 제35조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채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런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시 산업부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함(참고5 참조).

두 법률은 기술탈취범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벌칙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 등을 부과하고자 하며,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관련 정보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표 9] 전략기술 정보 목적외 사용 처벌

제50조(벌칙)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동 법률에 따른 외국인투자제한결정을 위반하면 방위산업물자 생산, 물품·기술의 군사목적 전용, 국가기밀 내용 공개 등의 국가안보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제한결정 위반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사유로 신설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유사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벌칙 수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허가 위반(기존 제1호) 및 시정명령 조치 미이행(기존 제3호13)에 대해서도 벌칙

수준을 상향하였음.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에 따라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통상적인 벌금보다 높은 수준을 부과하는데 비해,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의 외국인투자제한결정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전략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및 경제적 이득 수취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칙수준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35조제2호는 안 제36조로 분리·이동하여 벌칙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¹⁴⁾이고 이들이 수집·검토

13) 참고로 조문이동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35조제3호를 “제28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 등)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자료나 비밀 등은 유출되더라도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의 유출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현행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법 제35조는 위반행위자와 기업대표에 대해서 각종 의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대학, 병원 등 각종 비영리 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지배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법인대표도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간접지배를 위한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법인대표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35조제2항은 신고·등록을 허위로 하거나 심의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투자제한결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제35조제1항제1호보다 낮은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고의성 및 의무위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안 제35조제1항제1호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5조제2항제2호는 심의 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

해서 벌칙을 부과하는데, 안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는 재량으로 규율하고 있어 법률상 의무위반¹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구조가 됨. 따라서 별도로 제5조제5항에 주식등의 취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시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5) 참고로 실무상으로는 외국인투자 신고서식에 따라 자신의 투자가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5. 시행일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제4항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제한의 대상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규로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행령(안) 입법예고(약 40~60일), 규제심사(약 15~20일), 법제처 심사(약 20~30일) 등의 절차¹⁶⁾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다소 촉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범자가 개정 법령 및 제도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2] 제정안 조문

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456

16) 법제처 법제업무정보-정부입법-입법과정 안내 참조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위산업물자”라 한다)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이하 “국가기밀”이라 한다)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2. 결정 사유

3. 조건의 내용(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허용한다고 통지한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심의·결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한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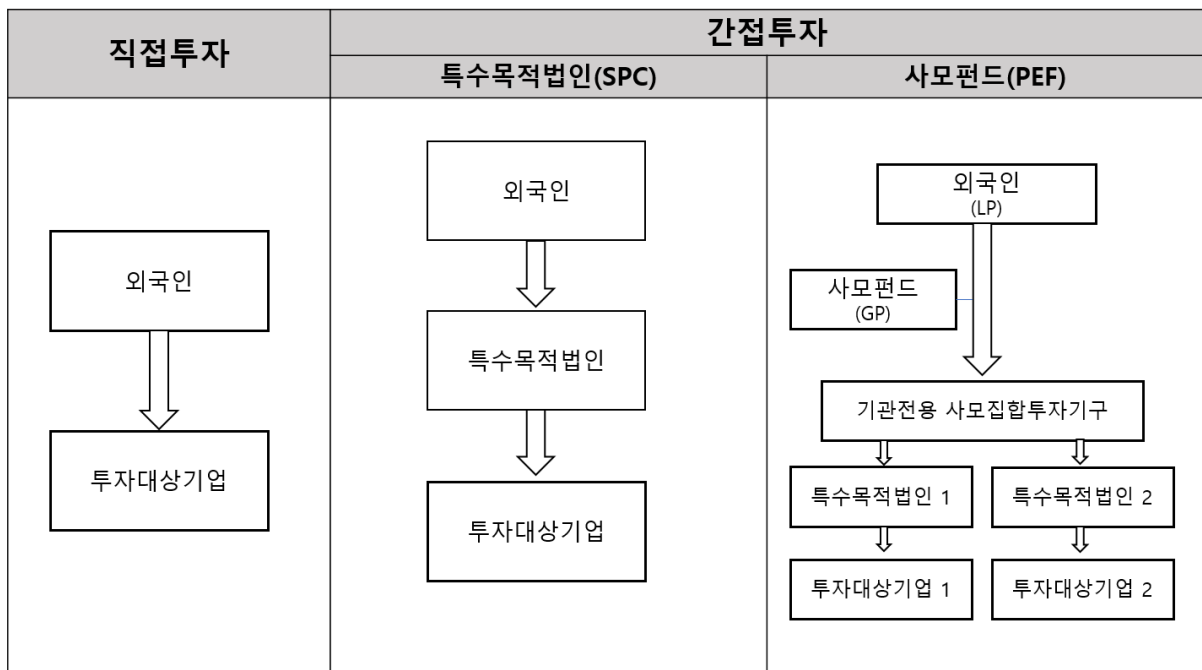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

-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참고 3

외국인투자 직접 vs. 간접투자 구조 비교

※ 간접투자는 대부분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사모펀드(GP)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참고 4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서 서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3.>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	-----	-----	------	-------------------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 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 대상 국내 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전화번호:)	
		(영문)		
	⑥ 주소(현주소 또는 예정지 주소)	본사 (전화번호:)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신고(신청) 접수기관 기재란]			
	⑧ 자본금 (출연금)	기존 주 취득 시	원	
		그 외	취득(출연) 전 원	취득(출연) 후 원
	⑨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	⑩ 투자대상 국내기 업의 영 제5조 제1항제2호나 목 해당 여부 []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 상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을 보유한 기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				
※ ⑨⑩에 모두 [v] 표시를 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이하 생략)				

참고 5

간접적 지배권 취득 관련 해외 입법례

1 한국

-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 (심의대상) 외국인투자의 ❶경영상 지배권 취득 및 ❷대상분야 해당 요건을 심의하여 국가안보위해 초래 결정·투자 제한 가능
- (간접투자) 외국인이 한국법인(자회사/펀드)를 통해 다른 한국기업의 지배권 취득시, 이는 안보심의 대상 불분명

2 미국

- (근거)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 (심의대상) ❶미국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창설하는 외투(지배적 투자), ❷TID* 관련 미국기업에 대한 외투(지배적 + 비지배적 투자) 등
- (간접투자: 可) CFIUS는 외국인이 국내 자회사 또는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심사 가능

3 일본

- (근거)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
- (대상)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150여개의 지정업종을 운영하며,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1% 이상 취득시 심사 진행
- (간접투자: 可) 외국인이 지배하는 일본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한 다른 일본기업의 인수 규제

4 영국

- (근거) NSI(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 (심의대상) ❶영국은 17개 지정업종에 대한 지배권 취득, ❷토지·동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등의 취득에 대해서 심사
- (간접투자: 可) 외국인이 계열사 지분 취득을 통해 영국기업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확보시, 간접투자로 간주하여 규율

□ 「산업기술보호법」상 벌칙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호 생략)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1. 제11조제6항·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1~13호 생략)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벌칙

제50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

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